「교수연구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70/compare?from=168&to=169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8:22:3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연구진흥실장, 연구진흥팀장, 교무처장, 기획실장, 대학원교학부장, 학부장 중 2인, 재무실장, 논문편집인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③위원장은 연구진흥실장이 된다.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부장이 서기가 된다. 〈개정 2015-02-16〉	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연구처장(위원장), 연구팀장(서기),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실장, 대학원장, 교수(2), 산학협력팀장, 초청(2: 음악학과장, 미술컨텐츠학과장)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. 〈개정 2015-02-16〉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〈개정 2015-02-16〉 1. 장.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.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 3.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4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5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6.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	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〈개정 2015-02-16〉 1. 장.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. 연구 규정 제·개정 〈개정 2016-02-29〉 3.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 4.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. 교외수탁연구 관련 사항 〈개정 2016-02-29〉 8. 연구소 평가 〈개정 2016-02-29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수연구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> 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연구처장(위원장), 연구팀장(서기),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실장, 대학원장, 교수(2), 산학협력팀장, 초청(2: 음악학과장, 미술컨텐츠학과장)으로 구성한다.
>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>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
>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>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> 1. 장.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
> 2. 연구 규정 제·개정
> 3.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중단 등 관리
> 4.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

5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
6.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
7. 교외수탁연구 관련 사항
8. 연구소 평가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